# ◎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-398호

「은행업감독규정」,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,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,「보험업감독규정」,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은행업감독규정」,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,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,「보험업감독규정」,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

#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새정부 가계대출 정상화방안」('22.6.16일), 「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」 ('22.10.27일)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# 2. 주요내용

가. 지역별·주택가격별 LTV 완화

규제지역 내 지역별·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지역·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%로 상향하여 단일화

나. 초고가(시가 15억 초과) 아파트 주담대 허용

투기·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. 서민·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

규제지역 내 서민·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우대폭을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20%p로 단일화하고(기존 10~20%p),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

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<u>2022년 11월</u> <u>16일까지</u>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금융정책과, 전화 : 02-2100-2845, 팩스 : 02-2100-2849, 이메일 : fsc0595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  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 - 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(주소 :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)
  - 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/법령정보/입법 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